



- * 특별법의 주요내용: 외국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절차,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및 자격조건 규정
- 또한,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
 - 외국병원이 겸업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*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·알선 허용을 통해 외국 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를 확대를 추진할 것임
- * 보양온천업, 관광숙박업, 국제회의업 등
-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 및 자율성 제고
 - (운영경비 차등지원비율 상향조정(전체운영비의 40% ⇒ 100%)
 - (구역청장의 인사권 강화 등 자율성 제고유도)
- 금년 4월말 추가지정된 3곳을 비롯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을, 투자유치실적·예산집행 등에 기초한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화 ⇒ 경제자유구역청간 “창의경쟁유도”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
 - 기존 운영비 지원액 전체의 40%한도내에서만 차등지원하여 오던 것을 향후 운영비 지원액 전체를 대상으로 차등지원
 - 개발실적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·확대 및 사업계획 축소·확대도 추진
- 외자유치분야에서의 민간 전문가 확대를 통한 전문화와 함께 구역청장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계약직직원의 임용권을 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인사권강화 유도
-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으로의 전환 검토
 - 현행법하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 행정 절차를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거쳐야 하고,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 사항도 그리 많지 않음
 - (예) 법문상으로는 실시계획 승인시 부처협의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각종 인·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실제로 환경, 문화재 관련 사항 등을 건건이 개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또한 협의시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허가기준이 적용됨

○ “제한된 지역에 대해 선도적 규제완화 실험”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법으로 전환 추진

- 개발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수립·변경되는 계획을 확대하고 사업승인과 동시에 처리되는 인·허가 사항을 확대

- 출입국관리법, 임대주택법 등에 대한 특례를 경제자유구역법에 직접 도입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사항도 확대할 방침

□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출입국 절차 대폭 간소화
(사증 발급 신청 절차 간소화, 입국 전용심사대 설치)

○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종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(예: 지식경제부 장관)의 고용추천서 등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

- 사증 발급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신속한 출입국과 투자기업의 안정된 고용관계 도모

* 특례 적용 사증 범위 : E-1(교수), E-3(연구), E-5(전문직업), E-7(특정활동; 외투기업 종사자 등) 등

○ 경제자유구역 투자자 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설치하여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(금년내 실시예정)